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057
------------	------------

제안일자 : 2019. 12. 17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문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문구를 통일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 건의안의 내용 중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으로 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을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와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09년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에서는 면도기, 칫솔 등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등 최근의 여론과는 괴리된 풍경을 낳게 되었다.

당시 규제 완화의 취지가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모든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무상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한 것이고, 오히려 1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게 되어 관계 법령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 여가문화의 변화에 따른 숙박업소의 증가 추세 등에 비추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설에 모든 숙박업소,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시설 또는 업종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